

제2575호
2018. 04. 18.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신 선 애
 전화: 3396-4952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8-39호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2
제2018-40호 : 2018년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3
제2018-41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6
제2018-42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2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서울특별시중구

고 시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39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지적도근점 번호	평면좌표(GRS80타원체)		평면좌표(베셀타원체)		소재지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9563	551386.38	199581.60	451080.52	199510.78	충무로4가 125-55
9564	551391.39	199540.54	451085.53	199469.73	충무로4가 133-5
9565	551373.97	199535.59	451068.11	199464.78	충무로4가 133-5
9566	551368.49	199578.95	451062.62	199508.14	충무로4가 125-55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설치일	2018년 3월 9일	
표지의재질	표철	
측량성과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40호

2018년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고 시 명 : 2018년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6-570번지 외 2필지(붙임1 참조)
※지정예정 대상지 도면 붙임2 참조
4. 고시일자 : 2018. 04. 18.(수)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사항(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도면은 중구청 공원녹지과에 방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공원녹지과(☎02-3396-58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도면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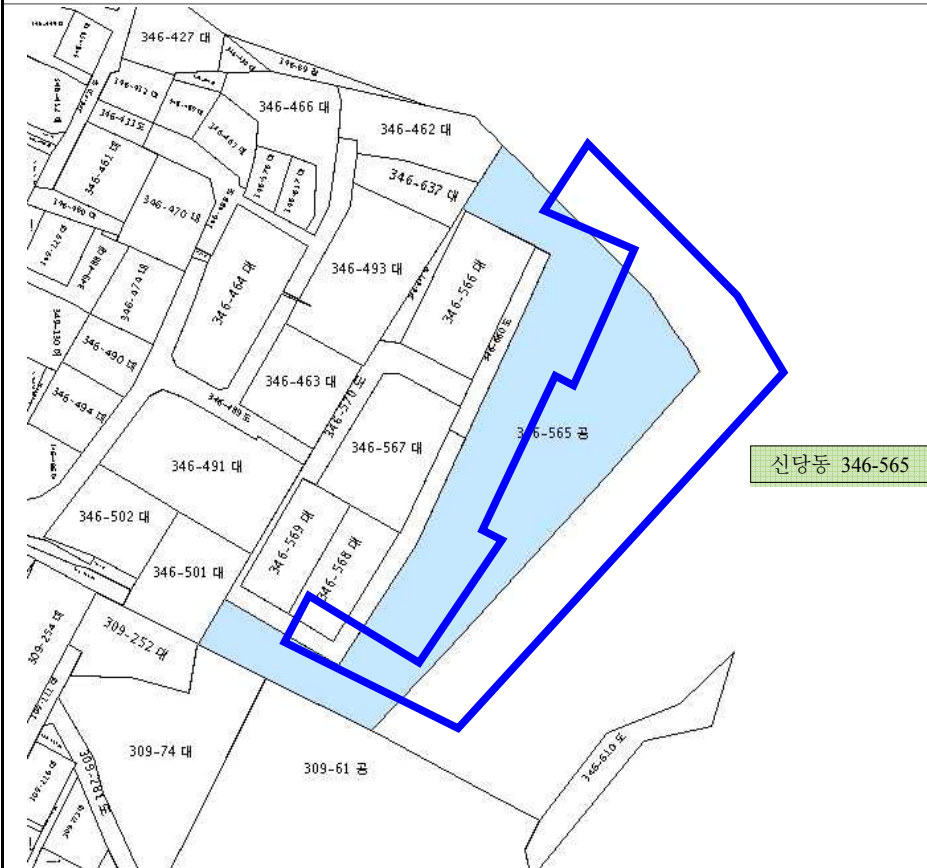
구 분	토 지 표 시							지정 면적 (m ²)	소 유 자		비 고
	시	구	법정동	행정동	지번	지목	지적 (m ²)		성 명	주 소	
				16개소	33필지		5,255	4,487			
1	서울	중	신당동	약수동	346-565	공원	4,307	4,307	서울특별 시중구		
2	서울	중	신당동	약수동	346-570	도로	748	123	성○용	서울특별시 강○구 논○동	
3	서울	중	신당동	약수동	346-660	도로	200	57	신○하 외 1인	서울특별시 강○구 대○동 외 1	

(붙임 2)

서울특별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 도면

번호: 제2018년-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 도면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구·동	지번	지목	면적 (㎡)	지정예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시 중구 신당동	346-565	공원	4,307	4,307	
서울시 중구 신당동	346-570	도로	748	123	
서울시 중구 신당동	346-660	도로	200	57	

(붙임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발체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41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14-1, 1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5	2018.04.18.	퇴계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4.22.	조선시대 유학자 이항의 호 인용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94-19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	2018.04.18.	퇴계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4.22.	조선시대 유학자 이항의 호 인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42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16	2018.04.18.	건물말소
2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9길 9-1	2018.04.18.	건물말소
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0길 43-16	2018.04.18.	건물말소
4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66-1	2018.04.18.	건물말소
5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68	2018.04.18.	건물말소
6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108	2018.04.18.	건물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